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김 강 수 소장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I. 서론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해 오던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 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도입되었고, 동 법이 1998년 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되었다. 특히, 2005년 1월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학교시설, 군주거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시설로 확대하고 이를 건설하기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 12월 말까지 총 632개에 달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한 총사업비는 73.9조 원에 이르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가시적인 성장 및 시장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용료로 인한 이용자와의 갈등,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 그리고 증가하는 민간투자사업자와 주무관청간의 분쟁 등은 향후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위험들

이 점차 민간 사업자에게 전이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위험을 줄이고 민간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및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대사업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즉,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의 이익을 통해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고, 주무관청인 경우에도 부대사업을 통한 이익의 공유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사용료 인하를 강구할 수 있는 등 부대사업의 추진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부대사업의 개념과 추진목적, 그리고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 및 구체적 유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도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부대사업 유형과 추진절차

부대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주

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사업이 29.4조 원(3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철도사업 13.1조 원(17.7%), 환경사업 9.7조 원(13.2%), 교육사업 7.5조 원(10.2%), 국방사업 4.9조 원(6.6%) 순이다.

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물류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도매배송서비스·공동집배송센터사업,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체육시설업,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사업,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²⁾. 민간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추진이 가능한 구체적 유형의 사업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부대사업의 추진 목적은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있다. 즉,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주무관청은 법 제21조 제14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는 부대사업의 이익처리와 관련하여 <표1>과 같이 세부 기준을 마

련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과 함께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잇점이 존재한다. 먼저, 각각의 부대사업을 규율하는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에 편입되어 보다 수월하게 신속하게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대사업을 민간투자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의 신청의 대행,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 업무의 대행,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준공검사·인가 등 의제(민간투자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 민간투자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에 따라 부대사업은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본 사업과 같이 추진한 부대사업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대사업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부대사업 추진 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은 2011년 8월 4일

<표 1> 부대사업의 이익처리 기준

구 분		부 대 사 업
협약상 처리	수익형 (BTO 등)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순이익(수입 - 비용)을 BTO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공식에 반영하여 처리
	임대형 (BTL 등)	· 세전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운영비용) 추정치를 현가로 환산 · 세전 순이익의 현가를 시설임대료 산정시 총민간투자비에서 사전 일괄공제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부대사업”을 법 제21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술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중 또는 운영기간 중에 추가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신규 민간투자사업시 동시에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중인 민간투자사업에서도 민간투자사업자의 투자비 보전, 사용료 인하,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으로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부대사업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 준공 후 운영 중에 추가로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부대사업 추진 절차는【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Ⅲ.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의 이익을 통해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고, 주무관청인 경우에도 부대사업을 통한 이익의 공유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사용료 인하를 강구할 수 있는 등 부대사업의 활성화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추진된 사업수나 규모, 그리고 내용면에서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예를 들어 도로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로 휴게소, 충전소, 정비소, 기념관 등이 임대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매점, 자판기, 편의시설, 차량내 광고, 요식업, 소매점 등 상가 임대업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사업 유형이 단순하다. 영국의 경우, 부대사업을 “third party revenue”라고 칭하고 있으며, SPC에 포함되어 있거나 SPC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운영사를 제외한 제3자에게 운영을 맡기거나 위탁, 임대 등의 방

식으로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³⁾, 일본의 경우 부대사업과 같은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부동산 사업을 본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있는⁴⁾ 측면과 비교되어 진다.

이런 측면에서 부대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무관청의 지원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즉, 본 사업과 달리 부대사업은 민간투자법이 아닌 관련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간사업 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사업과 달리 특별한 지위와 권리를 지니지 못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민원과 금융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추진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대사업의 추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간 및 정부고시 사업인 경우, 주무관청이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를 할 때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을 검토하여 발굴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예정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에서 본 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으로 결코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하여 배제 목록도 작성해 사전에 부대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본 사업의 추진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대사업 역시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나 지역 주민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주도적으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들과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결과를 민간에게 제공하는 등 추진된 주무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Brighton대학의 경우, PFI사업으로 체육관, 대학기숙사 등의 건립을 추진하여 체육관 내 소핑시설, 헬스클럽 등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 다른 부대사업의 사례 중에서 군주거시설 사례가 있는데, 영국 서부지역 Bristol과 Bath지역의 군주거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군주거시설의 부대사업으로 군 주거용만이 아닌 일부 기구를 부대사업으로 별도로 건립한 후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4) 시가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계, 건설 등의 업무를 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부터 민간사업자가 위탁받고, 동 사업에 관련된 유보지를 SPC에 참가하는 부동산 기업연합이 취득하여 부동산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한 경우도 존재한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시 부대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본 사업의 평가항목과 마찬가지로 부대사업 계획 즉, 사업비 등 비용의 산정, 수요추정과 소요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항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발한 부대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평가배점의 상향조정을 검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실 예로 기존 철도 BTL 사업인 경우 부대사업을 통한 재정부담 및 사용료 인하가 평가의 중요 요소로 작용되었고, 이를 통해 주무관청은 상당부분의 사용료 및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충실하고 다양한 부대사업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해 현행 고시나 공고기간을 늘려 사업자에게 사업제안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부대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비 한도, 공사착수 시기 등 몇 몇 제한규정과 용지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고 수요위험은 물론 해지시지급금 적용배제 등 제반 사업위험을 본사업과 달리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와 부속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와 부속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분리하고, 한 쪽의 사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업의 리스크 영향 정도와 그 부담 내용을 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대사업을 통해 사용료 인하나 재정부담 경감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주무관청이 고시 또는 제3자 제안 공고 시 부대사업을 제시하는 경우, 부대사업과 본 사업과의 위험을 분리하는 방안은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위험 분리는 궁극적으로 부대사업에 필요한 금융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본 사업의 추진이 부대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부대사업으로 인한 이익 공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초과 이익에 대한 배분 문제는 유사 사업의 부대사업 수익을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협약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대사업에 대한 비용과 수익을 큰 틀에서 사전 확정형에서 사후 정산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 확정형에서 사후 정산형으로의 전환은 부대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 시행자의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대사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⁵⁾. 그러나 사후 정산형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경우, 부대사업의 추진이 사업선정 및 사업자 선정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제안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 선정 및 사업자 선정의 평가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사후 정산형을 도입함으로써 부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IV. 종합 및 결론

본고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및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의 이익을 통해 추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고, 주무관청인 경우에도 부대사업을 통한 이익의 공유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사용료 인하를 강구할 수 있는 등 부대사업의 활성화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다.

본고에서는 부대사업의 개념과 추진목적 및 그리고 부대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시설과 구체적 유형 그리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건

5) 현재와 같이 사전 확정형으로 지속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만 부대사업은 시행하게 되어 부대사업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존재해 부대사업을 통한 사용료 인하 및 재정 부담의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설 또는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도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예정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하여 배제 목록도 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부대사업인 경우에도 가능한 인허가 의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부대사업 역시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나 지역 주민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주도적으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들과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결과를 민간에게 제공하는 주무관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본 사업의 평가항목과 마찬가지로 부대사업 계획 즉, 사업비 등 비용의 산정, 수요 추정과 소요재원 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 항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발한 부대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평가배점의 상향조정을 검토하는 방안이 검토되

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부대사업의 위험분담 및 이익 공유 조정과 관련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와 부속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며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부대사업을 고시하여 제시하는 경우, 부대사업과 본사업과의 리스크를 완전히 분리하고 부대사업으로 인한 이익공유도 사전 확정형에서 사후정산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에 대한 위험을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12.
 노승범·구석모·고유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9.
 법제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부록 1 】

〈표 1〉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구 분	구체적 유형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단독, 공동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택단지 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아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표 1〉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계속)

	구 분	구체적 유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업 :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 * 일반물류터미널사업 :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 도매배송서비스 :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사업 - 공동집배송센터사업 :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조성 및 운영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표 1〉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계속)

	구 분	구체적 유형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 사업	문화시설 :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시설을 말함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
1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옥외광고물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게시시설 :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운영 사업	건축물 :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8	그 밖에 사용자 인화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노승범·구석모·고유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9

【 부 록 2 】 부대사업의 구체적 절차

가.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차 제안공고)와 동시에 부대사업을 시행

○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절차〉	〈주 체〉	〈부대사업 관련 내용〉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	(주무관청)	- 민간투자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 - 총사업비 2천억 원(BTL 사업의 경우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주무관청)	- 부대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경우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민간투자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총사업비 2천억 원(BTL 사업의 경우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제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포함시킴 (민간투자법 제12조)
↓		
사업계획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대사업 관련 내용을 평가함 (민간투자법 제13조 제1항)
↓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대사업의 효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고, 실시협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함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4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2항 내지 제3항)
↓		
실시계획승인 신청	(사업시행자)	-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대사업의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함(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실시계획 승인·고시	(주무관청)	-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민간투자법 제21조 제9항), -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8항에 따라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함
↓		
공사시행	(사업시행자)	- 부대사업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건설

【 부록 2 】 부대사업의 구체적 절차(계속)

가.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차 제안공고)와 동시에 부대사업을 시행

○ 정부고시사업의 경우(계속)

〈민자사업 추진절차〉	〈주 체〉	〈부대사업 관련 내용〉
↓		
준공확인	(주무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민간투자법 제22조 제3항) - 주무관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22조 제4항) -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4항)
↓		
운영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1항) - 부대사업의 이익이 협약상의 추정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2항)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절차〉	〈주 체〉	〈부대사업 관련 내용〉
제안서 제출	(민간부문)	- 제안서에 부대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음(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
↓		
제안서 접수, 제안서 검토의뢰	(주무관청)	- 제안서 접수 후 30일 이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내지 제3항)
↓		
제안서 검토(적격성 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안서 검토(적격성조사) 수행 후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제3차 제안 공고	(주무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고함(민간투자법 제9조 제3항) - 총사업비 2천억 원(BTL 사업의 경우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
↓		
사업계획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대사업 관련 내용을 평가함(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9항, 제13조 제1항)

집 중 조 명 Ⅱ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계속)

〈민자사업 추진절차〉	〈주 체〉	〈부대사업 관련 내용〉
↓		
실시협약 체결 ·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대사업의 효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고, 실시협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함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4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의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2항 내지 제3항)
↓		
실시계획승인 신청	(사업시행자)	-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대사업의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함(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실시계획 승인 · 고시	(주무관청)	- 부대사업 관련 인 · 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민간투자법 제21조 제9항) -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8항에 따라 인 · 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함
↓		
공사시행	(사업시행자)	- 부대사업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건설
↓		
준공확인	(주무관청)	-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민간투자법 제22조 제3항) - 주무관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22조 제4항) -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4항)
↓		
운영	(사업시행자)	-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1항) - 부대사업의 이익이 협약상의 추정순이익 초과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2항)

나.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중에 추가로 부대사업을 시행

〈추진절차〉	〈주 체〉	〈부대사업 관련 내용〉
사전협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 부대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하여 충실하게 협의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의2 제1항)

나.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중에 추가로 부대사업을 시행(계속)

〈추진절차〉	〈주 체〉	〈부대사업 관련 내용〉
↓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민간투자법 제21조 제3항)
↓		
실시계획 변경승인 · 고시	(주무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민간투자법 제21조 제5항) - 민간투자사업(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 억원(본 사업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의2 제2항) - 민간투자사업(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 원(본 사업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민간투자법 제21조 제5항) - 부대사업 관련 인 · 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민간투자법 제21조 제9항) -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의2 제3항) -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 21조 제7항). 부대사업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 민간투자법 제21조 제8 항에 따른 인 · 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함
↓		
공사시행	(사업시행자)	- 부대사업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건설
↓		
준공확인	(주무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 (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민간투자법 제22조 제3항) - 주무관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22조 제4항) -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62조 제4항)
↓		
운영	(사업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62조 제1항) - 부대사업의 이익이 협약상의 추정순이익 초과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2항)

다. 민간투자사업의 준공 후 운영 중에 추가로 부대사업을 시행

〈추진절차〉	〈주 체〉	〈부대사업 관련 내용〉
사전협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 부대사업의 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조건 등에 관하여 충실하게 협의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의2 제1항)
↓		
부대사업 제안서 제출	(사업시행자)	-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 신청(민간투자법 제21조 제4항)
↓		
부대사업 제안서 승인·고시	(주무관청)	-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민간투자법 제21조 제5항) - 민간투자사업(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 억원(본 사업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부대사업 제안서 승인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의2 제2항) - 민간투자사업(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2천억 원(본 사업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민간투자법 제21조 제5항) - 부대사업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민간투자법 제21조 제9항) - 부대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함(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의2 제3항) - 부대사업 제안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21조 제7항). 부대사업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 민간투자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함
↓		
공사시행	(사업시행자)	- 부대사업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건설
↓		
부대사업 준공확인	(주무관청)	-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민간투자법 제22조 제3항) - 주무관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22조 제4항) - 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4항)
↓		
부대사업 운영	(사업시행자)	-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운영(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1항) - 부대사업의 이익이 협약상의 추정순이익의 초과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조 제2항)